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

Guidance on Drawing up the Result Tables for
Workers' Health Examina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목 차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요령	2
4.1 일반 작성 원칙	2
4.2 항목별 작성 원칙	4
5.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요령	10
5.1 일반 작성 원칙	10
5.2 항목별 작성 원칙	10
6.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진단결과표 작성요령	19
6.1 일반 작성 원칙	19
6.2 항목별 작성 원칙	19
〈별표 1〉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 (권고치)	24
〈부 록〉	26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

(Guidance on Drawing up the Result Tables for Workers' Health Examination)

1. 목적

이 요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 규정과 규칙 별지 제22호(1) 및 (2) 서식, 노동부 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0조제1항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3항 및 부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44호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수행 후,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 시 관련 사항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 정의하는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규칙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22호(1) 및 (2)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2차 건강진단 미수검자”란 일반 및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수행 후,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고지하였으나 실시하지 않은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수행 후,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자로 2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나) “건강진단 실시시작일”은 대상근로자 1인이 해당 건강진단을 최초로 실시한 날을 말한다. 단, 2차 건강진단이 있을 경우, “1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과 “2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로 별도 구분할 수 있다.

- (다) “건강진단 실시완료일”은 개별 대상근로자 1인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건강진단 항목의 실시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단, 2차 건강진단이 있을 경우, 2차 건강진단 항목의 실시를 완료한 날을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본다. “1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과 “2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별도 구분할 수 있다.
- (라) 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에서 언급되는 “건강진단 실시일” 혹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은 본 요령에서 대상근로자 1인의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적용한다.
- (마) “건강진단 실시기간”은 규칙 별지22호(1) 및 (2) 서식(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건강진단사후관리소견서)에 의한 것으로, 해당 양식에 기입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단위별 대상근로자 집단 중에서 가장 빨리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1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과 가장 늦게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2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한다.
- (2) 기타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요령에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동법 규칙·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및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이하 “실무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바를 준용한다.

4.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요령

4.1 일반 작성 원칙

(1) 명단 기입 대상

(가) 일반 및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 규칙 제105조제3항의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결과 통보」에 해당되는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A판정을 받은 정상자도 기입 대상¹⁾이다.

(나)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 및 그 외 규칙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으로 갈음하는 경우

- 일반 및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특수건강진단을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의 보

1) 사업주에게 근로자건강진단 개인표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되었기에, 사업주가 1,2차 건강진단 미수검자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상에서 파악 가능토록 한 조치이다.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및 그 외 규칙 제9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으로 같음하는 경우

- 일반 및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작성 서식

(가) 규칙 제10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 별지 제22호(1) 및 (2) 서식을 이용한다.

(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식의 표의 크기 및 간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나 항목을 임의 삭제·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작성 항목

(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 서식 중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에서 ‘사업장명’, ‘실시기간’, ‘공정(부서)’, ‘성명’, ‘성별’, ‘나이’, ‘근속년수’,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작성한다.
-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C 판정자 이상에 대하여 기재하며, U 판정자는 작성 가능한 항목만 기재한다.

(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중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에서 ‘사업장명’, ‘실시기간’, ‘공정(부서)’, ‘성명’, ‘성별’, ‘나이’, ‘근속년수’, ‘유해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참고치)’,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작성한다.
-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C 판정자 이상에 대하여 기재하며, U 판정자는 작성 가능한 항목만 기재한다.
- ‘생물학적 노출지표(참고치)’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한다.

(다)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같음하는 경우 및 그 외 규칙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으로 같음하는 경우

-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특수건강진단을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및 그 외 규칙 제9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으로 같음하는 경우

-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하다.

4.2 항목별 작성 원칙

(1) 공정(부서)

건강진단 대상자의 소속 공정 혹은 부서를 기입한다.

(2) 성명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성별

주민등록상의 ‘남’, ‘여’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4) 연령

(가) ‘만 나이’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만 나이’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 근속년수

(가) 입사 후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작성한다.

※ 공정(부서) 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일 단위는 절사(버림)한다.

※ ‘○년 ○개월’로 표현한다.

(다) 여러 번 입퇴사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유해인자

(가)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개개인의 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작성한다.

(7) 생물학적 노출지표

(가)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개개인이 규칙 별표 13의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받았을 경우, ‘유해물질명’, ‘생물학적 노출지표명’, ‘검사결과수치’ 및 ‘해당 노출지표의 참고치(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참조)’를 작성한다. 이 때 작성은 “유해물질명” + “-” + “지표물질명” + “검사결과수치” + “(참고치)”의 어순으로 작성한다.

※ 작성 예 : 납-혈액 납 15 $\mu\text{g}/\text{dL}$ (30 $\mu\text{g}/\text{dL}$)

— A판정을 받은 정상자도 기입 대상이다.

(8) 건강구분

(가)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에 의거하여 A/C/D₁/D₂/U로 작성한다.

(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에 의거하여 A/C₁/C₂/D₁/D₂/U로 작성한다.

(다)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5에 의거하여 A/B/‘일반 질환의심’/‘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유질환자’/D₁/D₂로 작성한 건강구분을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A 판정 시

- A 판정 그대로 기재한다.

－ B 판정, ‘일반 질환의심’ 및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판정 시

-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에 의거하여 A/C/D₁/D₂/U로 전환하여 판정한다. 이 때 해당 판정을 위하여 <별표 1>(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판정 기준 전환표)에서 제안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2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 의사는 고혈압·당뇨병 1,2차 검사 결과 중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값을 선택하거나 두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의사판단에 의한다.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자에서 2차검진이 미 실시 될 경우, 1차검진 결과에 관계없이 U판정을 한다.

※ 1차 검진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을 받은 경우, 1차 검진 기관에서는 2차 검진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U판정을 한다.

－ ‘유질환자’ 판정 시

- D₂로 판정한다.

－ D₁/D₂ 판정 시

- D₁/D₂ 판정 그대로 기재한다.

※ 흉부방사선 영상을 판독 상 진폐증(ILO category 1/0 이상)이 의심되고, 기존에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진폐증(ILO category 1/0 이상)으로 D₁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D₁판정으로 변환하여 기재한다.

※ 혹은 흉부방사선 영상을 판독 상 진폐증(ILO category 1/0 이상)이 의심되고, 직업력 문진 상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D₁판정으로 변환하여 기재한다.

(라) 건강구분은 **질병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가령 1인이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의한

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제6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서식 상에 정의하는 **목표질환으로 판정**한다.

- 목표질환 : 흉부질환, 순환기질환(고혈압), 순환기질환(고지혈증), 간장질환(간기능), 빈혈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피부질환, 비만, 청력

- **질병 분류 내에 2개 이상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경우**, 가장 높은 이상 판정등급(요소건>요관찰>정상)을 받은 검사항목을 해당 질병의 대표 판정으로 작성한다.

- ※ 예시 1 : 1차 검사 결과 간장질환에 해당되는 검사값이 AST 90, ALT 210, rGTP 40으로 나와 ALT 검사로는 D판정이 가능하다 해석될 경우 ‘D 간장질환요소건’ 판정을 함

- ※ 예시 2 : 1차 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260으로 높아 2차 검사를 한 결과 TG 400, HDL 20으로 나와 TG 검사로는 D판정이 가능하다 해석될 경우 ‘D 순환기질환(고지혈증)요소건’(혹은 기관별로 고중성지방혈증요소건 등 자유롭게 소견을 적어)판정을 함

-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제5호 ‘건강진단개인표’ 상의 ‘판정란’(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참조)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2호 ‘2010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2009. 12. 31)’ 별표 5의 별첨에 정의하는 목표질환으로 판정한다.

- 목표질환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비만,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청력

- 구강검진,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에 의한 목표질환은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하지 않는다.

(마)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일 일자에 한 기관에서 함께 받은 경우라도 별개의 건강진단이 실시된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한다. (예, 특수건강진단에서 순음청력검사 상 D₁ 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건강진단에서 1000Hz에서 40dB 이상 측정될 때 해당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D₁으로 적지 않고 D₂로 한다. 단, **진폐 판정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일반건강진단에서도 D₁을 줄 수 있다.**)

(9) 검진소견

(가) 건강진단 검사결과, 문진결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환별로 작성**한다.

-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제6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서식 상에 정의하는 **목표질환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목표질환 : 흉부질환, 순환기질환(고혈압), 순환기질환(고지혈증), 간장질환(간기능), 빈혈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피부질환, 비만, 청력

※ 목표질환 명칭을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히 고쳐 적는 등 기관별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하다.
(예 : ‘흉부질환유소견’ → ‘폐결핵경증’; ‘신장질환주의’ → ‘단백뇨주의’ ; ‘순환기질환(고혈압)유소견’ → ‘고혈압유소견’ 등)

-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제5호 ‘건강진단개인표’ 상의 ‘소견란’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2호 ‘2010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2009. 12. 31)’ 별표 5의 별첨에 정의하는 목표질환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목표질환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비만,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청력

※ 목표질환 명칭을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히 고쳐 적는 등 기관별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하다.

- 구강검진,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에 의한 목표질환은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하지 않는다.

(나) 판정 상 정상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

- 폐결핵 흔적, 건강 B형 간염 보균 등은 ‘소견란’에 언급하지 않고 n‘정상’으로 작성한다.

(다) 판정 상 정상 이외의 경우 이상 소견의 검사항목 결과값을 함께 기재한다.

- 2차 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1,2차 검진 항목 모두 혹은 판정 근거가 되는 결과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1개의 질병 판정 내에 2개 이상의 검사항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목표질환의 검사항목의 결과값 모두를 기재한다.

※ 예시 1 : ‘C 이상지질혈증주의’ 시 TC, TG, HDL, LDL 검사결과값 모두를 기재

※ 예시 2 : ‘C 소음(이비인후) 주의’ 시 기도//골도 검사의 해당주파수(Hz)별 결과값 모두를 기재

〈1차〉

기도청력 1000 Hz(좌): 40 dB

기도청력 1000 Hz(우): 5 dB

기도청력 2000 Hz(좌): 45 dB

기도청력 2000 Hz(우): 10 dB

기도청력 3000 Hz(좌): 45 dB

기도청력 3000 Hz(우): 10 dB

기도청력 4000 Hz(좌): 45 dB

기도청력 4000 Hz(우): 10 dB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1차의 경우

〈2차〉

기도청력 500 Hz(좌): 40 dB
 골도청력 500 Hz(좌): 10 dB
 기도청력 500 Hz(우): 5 dB
 골도청력 500 Hz(우): 5 dB
 기도청력 1000 Hz(좌): 40 dB
 골도청력 1000 Hz(좌): 15 dB
 기도청력 1000 Hz(우): 5 dB
 골도청력 1000 Hz(우): 0 dB
 기도청력 2000 Hz(좌): 45 dB
 골도청력 2000 Hz(좌): 15 dB
 기도청력 2000 Hz(우): 10 dB
 골도청력 2000 Hz(우): 10 dB
 기도청력 3000 Hz(좌): 45 dB
 골도청력 3000 Hz(좌): 15 dB
 기도청력 3000 Hz(우): 10 dB
 골도청력 3000 Hz(우): 10 dB
 기도청력 4000 Hz(좌): 45 dB
 골도청력 4000 Hz(좌): 15 dB
 기도청력 4000 Hz(우): 10 dB
 골도청력 4000 Hz(우): 10 dB
 기도청력 6000 Hz(좌): 40 dB
 기도청력 6000 Hz(우): 15 dB

특수건강진단
 2차의 경우

(10) 사후관리소견

(가)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별표 4의 사후관리조치 판정을 기술한다.

- A판정의 경우, 사후관리조치 중 ‘미기재 또는 “필요없음”으로 기재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단, 건강진단 의사가 원할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조치 판정도 가능하다.
-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및 ‘유질환자’판정일 때, 해당 판정에 대한 판정의사의 사후관리조치 사항들 중 하나 이상이 사업주의 조치 및 배려 하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에서 아래 사후관리조치 판정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별표 4) 내용 중 ‘2.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5.근로시간 단축’, ‘6.작업전환’, ‘7.근로제한 및 금지’, ‘8.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의 경우

표 1. 사후관리조치 판정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별표 4)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9	기타()

(※ 주의 : 아래 사후관리조치 내용 중 ‘3. 추적검사’는 일반 및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에서 **사업주 부담으로 수행**되는 사후관리 조치 행위로, C₁/D₁ 해당에서만 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시한 시기에 실시하는 조치임)

(나) 사후관리소견은 판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령 1인이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별로 판정이 이뤄지므로 해당 판정별로 사후관리소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단일 요인으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판정별로 사후관리소견을 기재할 때 중복으로 기재하지 않고 한번으로 기재할 수 있다.

(11) 업무수행적합 여부

(가) 일반 및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2008.12.3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의 업무수행적합여부를 기술한다.

(나) 업무수행적합 여부는 건강진단 수검자에 대한 대표판정으로 한다. 즉 수검자 1인에 대한 업무수행적합 여부는 1개이다.

(12)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 예시

〈부록〉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 예시 참조

5.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요령

5.1 일반 작성 원칙

(1) 결과표 집계 대상

(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자로, 규칙 제105조제3항에 의거하여 일반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대상 이 된다.

(나)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 및 그 외 규칙 제99호제1항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으로 갈음하는 경우

-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일반건강진단을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과 동일 실시기간 중에 함께 받은 자의 대상 여부

- (가) 및 (나)의 요건을 만족한 집계 대상일 경우, 별지 제22호의(2) 서식(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집계대상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집계한다.

※ 중복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를 어느 한쪽(일반↔특수)으로 전환하여 기재하지 않는다(일반과 특수 각 집계한다).

(2) 작성 서식

(가) 규칙 제10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 별지 제22호(1) 서식을 이용한다.

(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식의 표의 크기 및 간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나 항목을 임의 삭제·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5.2 항목별 작성 원칙

(1) 총 근로자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총 인원을 기재한다.

(2) 실시기간

(가) 1차 : 제1차 건강진단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보고하고자 하는 결과표 집계 대상근로자 집단 중에서 가장 빨리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1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과 가장 늦게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1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적는다.

(나) 2차 : 제2차 건강진단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보고하고자 하는 결과표 집계 대상근로자 집단 중에서 가장 빨리 2차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2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과 가장 늦게 2차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2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적는다.

(3)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장등록번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²⁾ 및 사업장등록번호³⁾를 기재한다.

(4) 업종코드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 의하여 세세분류(5자리) 숫자를 기재한다.

(5) 주요 생산품

해당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을 기재한다.

(6) 건강진단현황

(가) 대상근로자

- 당해 년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혹은 이미 받은 대상자 전원을 직종별·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당해 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일자로 정한다.
 - 당해 년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 도중 일반건강진단을 이미 받은 대상자에서 이직·퇴직·사망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상근로자 집계를 보존한다.
 - 당해 년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 도중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서 이직·퇴직·사망·취직 등의 제외·추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작성 시점에서 해당자를 제외·포함하여 대상근로자 집계를 수정한다.
 - 직종은 사무직 및 기타로 기술하되 사무직의 정의는 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부-44(2010. 1. 6)호 「건강검진 운영세칙 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작성한다.

2)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개시신고서 부여받은 번호, 고용보험료 납부서에도 기재

3)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나) 수진근로자

- 위에서 기입한 ‘실시기간’ 중 실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전원을 직종별·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2차 건강진단 미수검자도 수진근로자에 포함한다.

(다) 질병건수

- 아래 5.2항 (6)호의(라) ‘질병유소건자’의 질병유소건 총 건수를 기재한다.
 - ※ 예시 : 1인이 2가지 질병에 이환된 경우 2로 기재
- 질병의 건수는 **목표질환으로 집계**한다. D₁의 경우 유해인자 항목의 건수로 집계한다.
 - 목표질환 : 흉부질환, 순환기질환(고혈압), 순환기질환(고지혈증), 간장질환(간기능), 빈혈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피부질환, 비만, 청력

(라) 질병유소건자

- 일반질병 유소건자(D₂), 직업병 유소건자(D₁)로 진단된 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상의 건강구분에 따라 재판정된 결과에 따라 집계한다.
- 1인이 2가지 이상의 일반질병에 이환된 경우, 질병자수(일반병)는 실인원 1인으로 기재한다.
- 1인이 2가지 이상의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 질병자수(직업병)는 실인원 1인으로 기재한다.
- 1인이 1가지 이상의 일반질병과 1가지 이상의 직업병에 동시에 이환된 경우, 질병자수는 일반병과 직업병에 각 1인으로 기재한다. 이 때 ‘최종집계란(계)’에는 실인원 1인으로 기재한다.
- ‘최종집계란(계)’에는 일반병과 직업병의 값을 직종별 · 성별로 구분하여 합계한다. 이 때, 집계값은 수진근로자를 초과할 수 없다.

※ 예시 : ◎◎ 사업장은 총 10명의 남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고, 이중 5명은 소음 및 광물성 분진으로 10년 넘게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나머지 5명은 사무직근로자로 이 중 사무직 2명은 작년에 일반건강진단을 받았다.

금년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소음 및 분진에 노출되는 비사무직 5명과 작년에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무직 3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무직 근로자 3명과 비사무직 근로자 5명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통보하였고, 사업주는 모 건강진단기관에 이들 8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의뢰하였다. 건강진단 결과 이중 4명만 정상이고, 질병유소건자가 총 4명이었다. 각 사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명(홍○동)은 1차 검사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검사 상 최종 ‘고혈압’으로 나왔다. 다른 1명(홍○호)은 간장질환으로 ‘일반 질환의심’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검사 상 ‘당뇨병’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1명(생산직)(홍○민)은 폐결핵의심

으로 ‘일반 질환의심’ 판정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검사 상 ‘당뇨병’ 판정을 받았고, 이전부터 특수건강진단 상에서 소음성난청 D₁판정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번「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에서는 청력에 대하여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생산직)(홍○상)도 특수건강진단 상에서 소음성난청 D₁과 진폐증D₁(ILO category 1/0 이상)을 계속 받고 있으며, 이번 검진에서 청력에 대하여 ‘질환의심’ 판정을 비결핵성질환으로 ‘일반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표 2).

표 2. ○○○○년도 A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결과 요약

이름	이상 검사 항목	검사 결과		건강구분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검진 소견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1차	2차		
홍○동 (사무)	혈압(1,2차) 공복혈당(1차)	160/110 150	150/100 90	D ₂	고혈압유소견
홍○호 (사무)	ALT 공복혈당(1,2차)	150 200	170	C D ₂	간장질환주의 당뇨유소견
홍○민 (기타)	홍부영상 청력검사(1000Hz) 공복혈당(1,2차)	폐결핵의증 45 160	140	D ₂ C D ₂	폐결핵 의증 난청주의 당뇨유소견
홍○상 (기타)	홍부영상 청력검사(1000Hz)	진폐의심 45		D ₁ C	진폐증유소견 난청주의

- 홍○동은 고혈압으로 판정의사가 D₂로 변경하여 판정함 ⇒ 일반병 1명, 최종집계란(계) 1명 (질병 건수 1건)
- 홍○호는 간장질환은 C로, 당뇨는 D₂로 변경하여 집계함 ⇒ 일반병 1명, 최종집계란(계) 1명, 요관찰자 1명 (질병 건수 1건, 요관찰자는 질병 건수에 미포함)
- 홍○민은 일반질환(폐결핵의증)으로 문진 상 결핵감염이 의심되어 D₂로, 당뇨는 D₂로, 청력은 기존 병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난청이 의심되나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1000Hz)만을 고려해 C로 변경하여 집계함 ⇒ 일반병 1명, 최종집계란(계) 1명, 요관찰자 1명 (질병 건수 2건, 요관찰자는 질병 건수에 미포함)
- 홍○상은 소음성난청 D₁과 진폐증D₁(ILO category 1/0 이상)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 ⇒ 직업병 1명, 최종집계란(계) 1명, 요관찰자 1명 (질병 건수 1건, 요관찰자는 질병 건수에 미포함)
- 총 4명의 질병 유소견자이므로 최종집계란은 4명으로 처리
- 요관찰자는 총 1명

표 3. ○○○○년도 A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예시【규칙 별지 제22호의(1) 서식】

건강진단 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수진 근로자			질병 건수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			제2차건강진단 미 수 검 자			
										계			일반병		직업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0	10		8	8		5	5		4						3	3					
사무직	5	5		3	3		2	2		2	2		2			1	1					
기 타	5	5		5	5		3	3		2	2		1		1		2	2				

(마) 요관찰자

- 건강진단실시결과 요관찰자(C)로 판정된 자를 기재한다.
- 요관찰자의 집계는 실인원으로 기재한다.
- 요관찰자는 C₁/C₂를 구분하지 않는다.
- 요관찰자의 집계는 질병 유소견자와 제1,2차 건강진단미수검자 집계와는 별도로 한다.

(바) 2차 건강진단미수검자

- 제2차 건강진단 미수검자(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2차 건강진단 불응자를 기재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같음하는 경우,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자 중 2차검진 미수검자를 기재한다.
- 2차 건강진단미수검자의 집계는 실인원으로 기재한다.

(7) 질병유소견자현황(다른 면 기재 가능)

(가) 결과표 3쪽(규칙 별지 제22호(1) 서식)의 질병분류에 의거 해당 질병자란에 직업경력별, 나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일반질병(D₂), 직업병(D₁)으로 진단된 항목만을 집계하여야 한다.
- 일반질병유소견 항목(D₂) 중 검사항목이 질병 소견 코드표(표 4)의 목표질환에 해당되는 경우, <표 4>에 의거하여 질병코드로 분류한다.
 ※ 질병 분류를 집계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해당 건강진단 검사 항목만으로는 확진이 안 되어 실제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5차 개정)의 R-code(기타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나 그 외 다른 코드로 분류함이 합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표 4>의 목표질환은 <표 4>의 권고에 따라 분류한다.
- 일반질병유소견 항목(D₂) 중 <표 4>의 목표질환 이외의 질병 코드의 선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5차 개정)의 질병분류 방식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직업병(D₁)은 <표 5>에 의거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병코드로 분류한다.

표 4. 일반 질병 소견 코드표(별지 제22호(1) 서식에서 발췌)

	질병코드	질병 소견	⇐	목표 질환	
				근로자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
일반질병유소견	A	특정감염성 질환	←	폐결핵	폐결핵(흉부)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	간장질환(B형 간염)	
	C	악성신생물	←	기타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	빈혈증	빈혈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비만, 순환기질환(고지혈),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F	정신 및 행동장애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난청	난청
	I	순환기계의 질환	←	순환기질환(고혈압)	고혈압
	J	호흡기계의 질환	←	기타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	간장질환	간장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신장질환	신장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기타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S	손상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X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표 5. 직업성 질병 소견 코드표(별지 제22호(2) 서식에서 발췌)

		질병코드	질병 소견
직업성 질병 유 소견자	물리적인 자에 의한 장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분진
		122	면분진
		123	석면분진
		124	용접분진
		129	기타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기타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유기화합물에 의한 중독	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콜
		211	이소프로필알콜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기타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금속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기타 금속에 의한 장애
	산·알칼리·가스 상물 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아나화합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기타 산·알칼리·가스상류에 의한 장애
	허가 대상 물질	500	휘발성콜타르피치(코우크스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기타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애
	기타	600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나) 질병유소견자현황은 건수로 기재한다.

- 1인이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란에 각각 모두를 기재한다.

※ 예시 : ◎◎ 사업장의 예

표 6. ○○○○년도 A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결과 요약

이름	이상 검사 항목	검사 결과		건강구분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검진 소견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1차	2차		
홍○동 (사무)	혈압(1,2차) 공복혈당(1차)	160/110 150	150/100 90	D ₂	고혈압유소견
홍○호 (사무)	ALT 공복혈당(1,2차)	150 200	170	C D ₂	간장질환주의 당뇨유소견
홍○민 (기타)	흉부영상 청력검사(1000Hz) 공복혈당(1,2차)	폐결핵의증 45 160	140	D ₂ C D ₂	폐결핵 의증 난청주의 당뇨유소견
홍○상 (기타)	흉부영상 청력검사(1000Hz)	진폐의심 45		D ₁ C	진폐증유소견 난청주의

- 홍○동은 고혈압으로 D₂로 집계됨, ⇒ I(순환기계 질환) 1건
- 홍○호는 간장질환으로 C와 당뇨로 D₂로 집계하였고,
⇒ K(소화기계 질환) 0건, E(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1건
- 홍○민은 폐결핵의증으로 D₂와 난청주의로 C로 집계됨,
⇒ A(특정감염성 질환) 1건, H(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0건, E(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건
- 홍○상은 난청주의로 C와 진폐증D₁(category 1/0 이상)으로 집계를 하였다.
⇒ H(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0건, 121(광물성 분진) 1건

표 7. ○○○○년도 A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예시 【규칙 별지 제22호의(1) 서식】

구 성	계	남	여
합 계	5	5	
I(순환기계 질환)	1	1	
K(소화기계 질환)	0	0	
E(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2	2	
A(특정감염성 질환)	1	1	
H(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0	0	
121(광물성 분진)	1	1	

—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이 동일 분류 코드로 잡힐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1) 서식의 질병소견코드표의 질병코드 별로 구분이 가능할 경우에만 별개 건으로 각각 집계한다.

- 아래 예시는 권고 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다.

※ 예시 1 : 근로자 1인이 목표질환 중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으로 D 판정 받을 때, E(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에 1건으로 집계

※ 예시 2 : 근로자 1인이 ‘정상혈압’,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별지 제9호 서식(흉부방사선 사진판독 소견서) 상, ‘F. 비결핵성질환의심(폐기종성 폐, 폐암의심, 심비대 및 확장된 대동맥궁)’, ‘E. 폐결핵 의증’으로 나올 때,

- 폐기종과 폐암은 별개 질병으로 분류하고 J(호흡기계의 질환)에 1건, C(악성신생물)에 1건으로 집계
- 고혈압이 아니므로 D₂ 판정이 나지 않고, 심비대 및 확장된 대동맥궁은 목표질환이 아니므로 판정하지 않음. I(순환기계 질환)에 0건으로 집계,
- 폐결핵은 A(특정감염성 질환)에 1건으로 집계

(8) 사후관리현황

(가) 질병유소건자

- 사후관리현황은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통해 전달한 사후관리조치사항으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현황을 작성하는 것이다.
- 결과표 집계 상 최종적으로 일반질병유소건자(D₂)와 직업병유소건자(D₁)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후관리조치현황을 기록한다.
- 사후관리조치 사항 중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치료’, ‘추적검사’, ‘보호구 착용’ 외 사항은 그 밖의 사항에 집계한다.
 - 조치사항이 ‘필요없음’인 경우는 집계하지 않는다.
- 질병유소건자 사후관리조치결과를 해당 사항에 기재할 때는 실인원수(건수가 아닌 질병자수)로 기입한다. 이 때 유소건자 1인이 두 가지 이상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는 경우 주된 사후관리소견 1개만을 선택하여 기입한다.
- 유소건자 1인이 일반질병유소건자(D₂)이면서 동시에 직업병유소건자(D₁)일 경우, 유소건자수는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각 1인으로 기재한다. 이 때 전체 집계란에는 실인원 1인으로 기재한다.

(나) 요관찰자

- 요관찰자 중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통해 전달한 사후관리조치사항을 실행할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요관찰자란의 집계는 질병 유소건자란의 집계와는 별도로 한다.
 - 수검자 1인이 일부 검사에 대하여는 질병유소건자이면서 동시에 일부 검사에 대하여 요관찰자로 판정될 경우, 질병유소건자란에 기 집계되었더라도 요관찰자란에도 중복집계토록 한다.

6.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진단결과표 작성요령

6.1 일반 작성 원칙

(1) 결과표 집계 대상

(가)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 건강진단기관에서 해당 건강진단을 받은 자로, 규칙 제105조제3항에 의거하여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나) 특수건강진단을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및 그 밖에 규칙 제99호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으로 갈음하는 경우

-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일반건강진단을 동일 실시기간 중에 함께 받은 자의 집계 대상 여부

- (가) 및 (나)의 요건을 만족한 집계 대상일 경우, 별지 제22호의(1) 서식(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집계대상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집계한다.

※ 중복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를 어느 한쪽(일반↔특수)으로 전환하여 기재하지 않는다(일반과 특수 각각 집계한다).

(2) 작성 서식

(가) 규칙 제10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 별지 제22호(2) 서식을 이용한다.

(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식의 표의 크기 및 간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나 항목을 임의 삭제·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6.2 항목별 작성 원칙

(1) 건강진단종류

해당 건강진단의 종류를 표시한다.

(2) 총 근로자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총 인원을 기재한다.

(3) 실시기간

(가) 1차(위) : 제1차 건강진단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보고하고자 하는 결과표 집계 대상근로자 집단 중에서 가장 빨리 시작한 근로자 1인의 ‘1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과 가장 늦게 시작한 근로자 1인의 ‘1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로 적는다.

(나) 2차(아래) : 제2차 건강진단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보고하고자 하는 결과표 집계 대상근로자 집단 중에서 가장 빨리 2차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2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과 가장 늦게 2차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2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적는다.

(4)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장등록번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⁴⁾ 및 사업장등록번호⁵⁾를 기재한다.

(5) 업종코드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 의하여 세세분류(5자리) 숫자를 기재한다.

(6) 주요 생산품

해당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을 기재한다.

(7) 건강진단현황

(가) 대상근로자

-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의 경우, 규칙 제99조제2항 및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규칙 제99조의2에 의거하여 특수건강진단결과표 상 실시기간 중에 실제 해당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집계한다.
- 수시·임시건강진단의 경우, 규칙 제98조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해당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집계한다.
- 위 해당되는 전원을 유해인자별·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집계 시 건수 항목에는 실인원이 아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유해인자 항목의 건수 합계를 기재하고, 실인원에는 해당근로자 전체 숫자를 기재한다.
 ※ 예시 : 1인이 2가지 이상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진단을 받게 된 경우, 대상자수는 실인원이 아닌 건수로 기재한다. 가령, 근로자 1인이 소음과 광물성분진 2가지 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1건, 광물성분진 1건으로 각각 기입하고 건수는 2건이 되나 실인원은 1인이 된다.
- 집계 시 유해인자 항목란(소음부터 기타 란까지)에 건수로 기재한다.

4)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개시 신고 시 부여받은 번호, 고용보험료 납부서에도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나) 수진근로자

- 일반 작성 원칙에 기술한 결과표 집계 대상에 해당되는 전원을 직종별·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노동부 고시 2008-101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의2에 따른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중 미수검자도 수진근로자에 포함한다.
- 위 해당되는 전원을 유해인자별·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집계 시 **건수 항목에는** 실인원이 아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유해인자 항목의 건수 합계를 기재하고, **실인원에는** 해당근로자 전체 숫자를 기재한다.
- 집계 시 유해인자 항목란(소음부터 기타 란까지)에는 **건수로** 기재한다.

(다) 질병유소견자

- 기본 원칙은 수진근로자 기입법과 동일하다.
- 수진근로자 중 일반질병 유소견자(D₂) 및 직업병 유소견자(D₁)로 진단된 자만을 기재한다.
- 위 해당되는 전원을 유해인자별·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직업병 유소견자(D₁) 집계 시 유해인자 항목란(소음부터 기타 란까지)에는 건수로 기재한다.
- 일반질병 유소견자(D₂) 집계 시 **건수 및 실인원 란에** 바로 기재한다. 즉, 일반질병 유소견자는 유해인자 항목란(소음부터 기타까지)에 기재되는 경우는 없다.
 - 일반질병의 건수 및 실인원 집계는 5.2항 (6)호의(다) ‘질병건수’의 원칙을 따른다.
- 집계 시 건수 항목에는 실인원이 아닌 질병유소견자 판정이 나온 유해인자 항목의 건수 합계를 기재하고, 실인원에는 해당근로자 전체 숫자를 기재한다.
 - ※ 1인이 1가지 이상의 일반질병과 1가지 이상의 직업병에 동시에 이환된 경우, 실인원은 일반병과 직업병에 각 1인으로 기재한다. 이 때 최종집계란(계)에는 실인원 1인으로 기재한다.
 - ※ 1인이 1개 유해인자에 대해 표적장기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D1판정이 나올 경우라도 1개의 건수로 집계한다. 즉, 1개의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1개의 질병건수만이 집계된다.

건강진단현황	구분		대상근로자			수진근로자			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일반질병		직업병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건수	실인원													
소음															
이상기압															
분진	광물성														
	석면														
	기타														
	분진														

(라) 직업성요관찰자

- 기본 원칙은 수진근로자 기입법과 동일하다.
- 수진근로자 중 직업성요관찰자(C₁)으로 건강구분된 자를 기재한다.
- 위 해당되는 전원을 유해인자별·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요관찰자의 집계는 질병 유소건자 집계와는 별도로 한다.
 - ※ 수검자 1인이 일부 검사에 대하여는 질병유소건자이면서 동시에 일부 검사에 대하여 요관찰자로 판정될 경우, 질병유소건자와 요관찰자로 **중복집계**토록 한다.

(마) 특수건강진단항목 분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아래 <표 8>과 같이 분류한다.

표 8.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분류표

결과표 상 분류		【별표 1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분류
소 음		소음
이상기압		고기압, 저기압
분 진	광물성	광물성 분진
	석 면	석 면
	그 밖의 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108종)
금 속	연	연
	수 은	수 은
	크 롬	크 롬
	카드뮴	카드뮴
	그 밖의 금속	금속류(19종)
산·알칼리·가스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진 동		진동
유해광선		방사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기 타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중 석면 제외 12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 -나프틸아민과 그 염, , 크롬산아연, o-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 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8) 질병유소건자현황(2쪽 기재)

(가) 결과표 2쪽(별지 제22호(2) 서식)의 질병분류에 의거 해당 질병자란에 직업경력별, 나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일반질병(D₂), 직업병(D₁)만을 집계하여야 한다.
- 일반질병유소건 항목(D₂)은 질병 소견 코드표(표 4)의 목표질환에 해당되는 경우, <표 4>에 의거하여 질병코드로 분류한다.

※ 질병 분류를 집계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해당 건강진단 검사 항목만으로는 확진이 안 되어 실제로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5차 개정)의 R-code(기타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나 그 외 다른 코드로 분류함이 합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표 4>의 목표질환은 <표 4>의 권고에 따라 분류한다.

※ 일반질병유소견 항목(D₂) 중 <표 9>의 목표질환 이외의 질병 코드의 선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5차 개정)의 질병분류 방식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직업병(D₁)은 <표 5>에 의거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병코드로 분류한다.

(나) 질병유소견자현황은 건수로 기재한다.

— 1인이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란에 각각 모두를 기재한다.

—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이 동일 분류 코드로 잡힐 경우에는 별개 건으로 각각 집계한다.

※ 예시 :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로 분류가능한 직업성질병유소견(D₁)건수가 다수일 때

— 일반질병유소견자 항목(D₂)은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 요령’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9) 조치현황

(가) 질병유소견자

— 사후관리현황은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통해 전달한 사후관리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현황을 작성**하는 것이다.

— 건강진단실시결과 일반질병유소견자(D₂), 직업병유소견자(D₁)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조치현황을 기록한다

— 사후관리조치 사항 중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치료’, ‘추적검사’, ‘보호구 착용’ 외 사항은 그 밖의 사항에 집계한다.

—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조치결과를 해당 사항에 기재할 때는 실인원수(건수가 아닌 질병자수)로 기입한다. 이 때 유소견자 1인이 두 가지 이상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후관리소견 1개만을 선택하여 기입한다.

• 우선순위는 ‘근로금지 및 제한’→‘작업전환’→‘근로시간단축’→‘근무중치료’→‘추적검사’→‘보호구착용’→‘기타’ 순이다.

(나) 요관찰자

— 상기 요관찰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자만을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요관찰자의 집계는 질병 유소견자 집계와는 별도로 한다.

※ 수검자 1인이 일부 검사에 대하여는 질병유소견자이면서 동시에 일부 검사에 대하여 요관찰자로 판정될 경우, 질병유소견자와 요관찰자로 중복집계토록 한다.

〈별표 1〉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 (권고치)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1차 검진						2차 검진
			국민건강보험법검진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유질환자	정상
			근로자건강진단	정상A		요관찰자C	유소견자D ₂	유소견자D ₂	비고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국민건강보험법검진	정 상 비활동성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폐결핵 약물치료 중	-
			근로자건강진단	정 상 비활동성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	폐결핵 약물치료 중	
○ 고혈압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20 미만 이며 80 미만	120-139 또는 80-89	140 이상 또는 90 이상		고혈압 약물치료 중	120 미만 , 80 미만
			근로자건강진단	140 미만 이며 90 미만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고혈압 약물치료 중	**
○ 당뇨	공복 혈당	m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00 미만	100-125	126 이상		당뇨 약물치료 중	100 미만
			근로자건강진단	100-125		126 이상	*	당뇨 약물치료 중	**
○ 이상 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m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근로자건강진단	239 미만		240 이상	*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HDL 콜레스테롤	m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60 이상	40-59	40 미만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근로자건강진단	40 이상		40 미만	*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트리글리 세라이드	m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00-150 미만	150-199	200 이상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근로자건강진단	199 미만		200 이상	*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LDL 콜레스테롤 ¹⁾	m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30 미만	130-159	160 이상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근로자건강진단	159 미만		160 이상	*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

* : 유소견자D₂의 권고기준이 없는 항목은 검진기관별로 별도 지정한 기준으로 D₂판정을 줄 수 있다. 판정의사는 검사항목별 검사 결과, 질환의 정도가 심하여 신속한 치료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₂판정을 하여야 한다.

** : 1,2차 결과를 종합하여 의사 재량에 따라 판정

1)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TG 400 mg/dL 이상인 경우 계산식을 이용한 결과값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제시하거나 판정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 (권고치)(계속)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1차 검진						2차 검진
			국민건강보험법검진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유질환자	정상
			근로자건강진단	정상A		요관찰자C	유소견자D ₂	유소견자D ₂	비고
○ 빈 혈	혈색소 - 남 - 여	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3.0-16.5 12.0-15.5	12.0-12.9 10.0-11.9	12.0 미만 10.0 미만		-	-
	- 남 - 여		근로자건강진단	12.0-16.5 10.0-15.5		12.0 미만 10.0 미만	*	-	-
○ 청 력	순음 청력검사	dB	국민건강보험법검진	40 dB 미만		40 dB 이상		-	-
			근로자건강진단	40 dB 미만		40 dB 이상	*	-	-
○ 간장질환	AST (SGOT)	U/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40 이하	41 - 50	51 이상		-	-
			근로자건강진단	50 이하		51 이상	*	-	-
	ALT (SGPT)	U/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35 이하	36 - 45	46 이상		-	-
			근로자건강진단	45 이하		46 이상	*	-	-
	γ-GTP - 남 - 여	U/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1 - 63 8 - 35	64 - 77 36 - 45	78 이상 46 이상		-	-
			근로자건강진단	78 미만 46 미만		78 이상 46 이상	*	-	-
○ 신장질환	요단백		국민건강보험법검진	음성(-)	약양성(±)	양성(+) 이상		-	-
			근로자건강진단	음성(-) 및 약양성(±)		양성(+) 이상	*	-	-
	혈청 크레아티닌	m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5 이하		1.5 초과		-	-
			근로자건강진단	1.5 이하		1.5 초과	*	-	-
○ 비 만	신장, 체중	BMI (kg/m ²)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8.5-24.9	25-29.9	30이상		-	-
			근로자건강진단	18.5-29.9		30이상	*	-	-
	허리둘레	cm	국민건강보험법검진	남 90 미만 여 85 미만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
			근로자건강진단	남 90 미만 여 85 미만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	-
	※표준체중 에 의한 비만 판정	%	국민건강보험법검진	-		-	-	-	-
			근로자건강진단	90이상-120미만		120이상	*	-	-

* : 유소견자D₂의 권고기준이 없는 항목은 검진기관별로 별도 지정한 기준으로 D₂판정을 줄 수 있다. 판정의사는 검사항목별 검사 결과, 질환의 정도가 심하여 신속한 치료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₂판정을 하여야 한다.

※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 판정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수행 시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에 활용하지 않는다.

〈부 록〉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 예시

※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수검자 1인이 고혈압,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탄광부진폐증(1/0)으로 이환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의(1) 서식】 2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¹⁾ (2면)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 년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 ²⁾	사후관리 소견 ²⁾	업무수행적합 여부 ²⁾
도장	홍○동	남자	38세	5년3개월	D ₂ C D ₂ D ₁	고혈압유소견 150/100, 140/100 간장질환주의 GGT 80 이상지질혈증유소견 TC 250 LDL 190 HDL 20 TG 200 광물성분진(호흡기계) 중독-진폐증유소견	1.건강상담 7.근로제한 및 금지(야간근무제외) 9.기타(금주 및 3개월 뒤 재검 요망) 4. 근무중(고LDL혈증)에 대하여 치료 9.기타(3개월 뒤 고지혈증 추적관찰 요망) 9.기타(금연, 추적관찰)	나
도장	홍○순	여자	35세	6개월	A	정상	0. 필요없음	가
비고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요관찰 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만 기재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 예시 : 특수건강진단 수검자 1인이 간장질환, 탄광부진폐증(1/0)으로 이환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3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¹⁾ (3면)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 년수	유해인자	생물학적노출지표 (참고치) ²⁾	건강 구분	검진 소견 ³⁾	사후관리 소견 ³⁾	업무수행적합 여부 ³⁾
도장	홍○동	남자	38세	5년3개월	톨루엔 광물성분진	톨루엔-소변 마노산 1 g/g crea(2.5)	C ₂ D ₁	간장질환주의 GGT 80 광물성분진(호흡 기계) 중독-진폐증 유소견	9.기타(금주 및 3개 월 뒤 재검 요망) 9.기타(금연, 추적 관찰)	나
도장	홍○순	여자	35세	6개월	톨루엔	톨루엔-소변 마노산 1 g/g crea(2.5)	A	정상	0.필요없음	가

비고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수검자를 기술하는 예 【규칙 별지 제22호의(1) 서식】 2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¹⁾

(2면)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 년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 ²⁾	사후관리 소견 ²⁾	업무수행적 합 여부 ²⁾
도장	홍○동	남자	38세	5년3개월	D ₂	고혈압유소견 150/100, 140/100	1.건강상담 4.근로제한 및 금지(야간근무제외)	나
					C	간장질환주의 GGT 80	9.기타(금주 및 3개월 뒤 재검 요망)	
					D ₁	광물성분진(호흡기계) 중독-진 폐증유소견	9.기타(금연, 추적관찰)	
도장	홍○순	여자	35세	6개월	A	정상	0.필요없음	가
경리	홍○녀	여자	33세	2년3개월	U	고혈압2차미수검	1.건강상담	나
					C	신장질환주의	9.기타(추적관찰)	
서무	홍○희	여자	40세	6년6개월	C	난청주의 기도청력 1000 Hz(좌): 30 dB 기도청력 1000 Hz(우): 40 dB	1.건강상담 9.기타(추적관찰)	나
서무	홍○표	남자	50세	30년6개월	D ₂	고혈압 유질환자(치료중) 110/75	9.기타(추적관찰)	가
비교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 만 기재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1)서식] <개정 2007.12.31>

(1ㄷ)

일반 건강진단결과표

총근로자 수	계	
	남	
	여	

실시 기간	제 1차	-
	제 2차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 생산품:											
소재지 :										(전화번호 :)											
										D₁ 및 D₂ 건수를 집계											
구분	대상근로자	수진근로자			질병건수			질병유소전자						요관찰자			제2차간강진단 미수검자				
								계		일반병		직업병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현황 (이면 기재 가능)	질병코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사후 관리 현황	구분	계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기타												
	질병별	계																			
		일반 질병	계																		
			남																		
요관찰자	직업 병	계																			
		남																			
		여																			
	계																				
작성일자: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¹⁾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 년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 ²⁾	사후관리 소견 ²⁾	업무수행적 합 여부 ²⁾
비고					년 월 일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만 기재					건강진단 기관명 : 건강진단 의사명 : (서명 또는 인)			

질 병 소 견 코 드 표

		질병 코드	질 병 소 견	직업성질병소견	유기화합물에 의한 중독	질병코 드	질 병 소 견	
		A	특정감염성 질환			207	사염화탄소	
일반질병소견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208	아세트	
		C	악성신생물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210	이소부틸알콜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211	이소프로필알콜
			F	정신 및 행동장애			212	이황화탄소
			G	신경계의 질환			213	크실렌
			H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214	클로로포름
			I	순환기계의 질환			215	톨루엔
			J	호흡기계의 질환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K	소화기계의 질환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금속류에 의한 중독	299	기타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301	니켈(카르보닐니켈 포함)
			O	임신, 출산 및 산욕			302	망간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303	베릴륨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4	삼산화비소
			R	기타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305	수은
			S	손상			306	연(4알킬연 포함)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307	오산화바나듐
			V	운수사고			308	카드뮴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309	크롬
			×	고온장애 및 자해		399	기타 금속에 의한 장애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산· 알카리· 가스 상물 질류에 의한 장애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402	불화수소
		직업성질병소견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110	소음성난청			403
121	광물성분진				404		아황산가스	
122	면분진				405		암모니아	
123	석면분진				406		염소화비페닐	
124	용접분진				407		염소	
129	기타분진				408		염화비닐	
130	진동장애				409		염화수소	
141	고기압				410		일산화탄소	
142	저기압				411		질산	
151	전리방사선				412		콜타르	
152	자외선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53	적외선				414		페놀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415		포름알데히드	
190	기타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416		포스겐	
유기화합물 에 의한 중독	201		노말헥산		417		황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418		황화수소	
	203		메틸부틸케톤		499		기타 산·알카리·가스상류에 의한 장애	
	204		메틸에틸케톤		코크스	500	휘발성콜타르피치 (코크스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젠		기타	600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 특수 ☐ 수시 ☐ 임시 건강진단결과표																																																
총 근로자 수		계																																														
		남																																														
		여																																														
		실시간										-																																				
												-																																				
												산재성립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생산물 :																																				
소재지 :												(전화번호 :)																																				
건강진단현황	구분		대상근로자			수잔근로자			질병유소견자						직업성요관찰자																																	
									계			일반질병		직업병																																		
	계		건설 실업																																													
																			소음																													
	이상기압																																															
															분진		광물성 석면																															
	유기화합물		기타 분진																																													
															금속		연																															
	수은																																															
																																			크롬													
	기타 금속																																															
																	산알라카스																															
	진동																																															
																	유해광선																															
기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구분		계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 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기타		작성일자 : 년 월 일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검진기관명 :										
																		일반 질병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직업병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일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직업성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람 수가 아닌
진수를 적는다.

(2쪽)

질 병 유 소 전 자 현 황

구분	질병 코드	질병유소전자	계	남	여	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반 질병 유 소 전 자	총계																
	소계																
	A	특정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애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애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과민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노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발성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기타 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S	손상															
	T	다발성 및 기타손상 증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원인															
	X	고온장애 및 저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업성 질병 유 소 전 자	소계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분진														
		122	면분진														
		123	석면분진														
		124	용접분진														
		129	기타분진														
		130	진동장애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기타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애														
	유기화합물 에 의한 중독	201	노말렉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콜														
		211	이소프로필알콜														
		212	이황화탄소														
		213	크릴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클로르														
		222	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기타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애														
	금속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기타 금속에 의한 장애														
	산·알칼리·가스 상물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아나화합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기타 산·알칼리·가스상물에 의한 장애														
	허가대상 물질	500	위발성클로로피크리(코우크스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501	페릴렌														
		502	염화비닐														
		599	기타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애														
	기타	600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장애														

(3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¹⁾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성명	성별	연령	근속 연수	유해 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 ²⁾	건강 구분	검진 소견 ³⁾	사후관리 소견 ³⁾	업무수행 적합 여부 ³⁾
비고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 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검진자만 기재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 건강진단 의사명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보건분야-기술자료 연구원 2010-26-510)

발 행 일 : 2010년 6월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강 성 규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전 화 : (032) 5100-829

F A X : (032) 5180-862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

Guidance on Drawing up the Result Tables for Workers' Health Examination